

瑞山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

# 審 查 報 告 書

2001. 8. 27  
총무위원회

## 1. 審査經過

- 가. 提出日字 : 2001. 8. 20
- 나. 提出者 : 瑞山市長
- 다. 回附日字 : 2001. 8. 21
- 라. 上程日字 : 2001. 8. 27

## 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自治行政課長 : 崔鎮珪)

### 가. 提案理由

-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관리전담기구와 공무원 정원 12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임.

### 나. 主要骨子

-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“831명”에서 “843명”으로 하고, 집행기관의 정원 “816명”을 “828명”으로 조정함(안 제2조).

### 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서산시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를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기구와 12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2001. 7. 31자로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통보됨.
-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9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어 본 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기구의 신설과 그에따른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실정임.
-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의 관련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1조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시설의 완벽한 관리와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판단되는바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### 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### 6. 審査結果 : 원안가결

의안번호	제 222호
의 결 년 월 일	2001. (제 회)

##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2001. 8. 20.

#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8. 20.  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## 개정이유

-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관리전담기구와 공무원 정원 12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임

## 주요골자

-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“831명”에서 “843명”으로 하고, 집행기관의 정원 “816명”을 “828명”으로 조정함(안 제2조).

## 기타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해당없음.
- 관련법규
  - 지방자치법 제103조
  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
  - 충청남도 행정 12200-1942(2001.7.31)호 : 문화체육시설 관리 전담기구·인력 보강 승인 통보

○ 정원 승인현황

(단위 : 명)

기관명	계	일반직						기능직
		소계	5급	6급	7급	8급	9급	
서산시문화체육 시설관리사무소 (사업소)	13	9	1 (행정)	2 (행정, 행정· 기계 복수)	2 (행정, 전기)	2 (임업, 토목)	2 (행정, 기계)	4 (사무, 조무, 위생 2)
본 청	△1					△1 (토목)		
합 계	12	8	1	2	2	1	2	4

※ 청원경찰 1명은 자체정원 별도 조정

○ 정원 증감현황

(단위 : 명)

구분	계	일반직								지도	기능	별정 정무
		소계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		
현정원	831	646	1	5	42	154	239	160	45	31	130	24
조정정원	843	654	1	5	43	156	241	161	47	31	134	24
증 감	+12	+8			+1	+2	+2	+1	+2		+4	

서산시조례 제 호

##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본문중 “831명”을 “843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816명”을 “828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행	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정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831명</u>이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816명</u> 2. (생    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843명</u> --- -----.</p> <p>1. ----- : <u>828명</u> 2. (현행과 같음)</p>